

가. 총 칙

BK21 four 사업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 four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BK21 four “초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질병 극복 융합 교육연구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 원칙

언급되지 않은 규정에 있어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BK21 four 사업 규정을 우선한다.

제 3조 내용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교체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4.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화경비 관련 지침

제 4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가천대학교

초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질병 극복 융합 교육연구팀

나.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 four “초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질병 극복 융합 교육연구팀”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four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3조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위원장), 사업팀장이 임명하는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 5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 **월 70만원** ([표 1] 대학원생 평가 기준에 따라 70만원이상 지급가능)
 -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 **월 130만원** ([표 1] 대학원생 평가 기준에 따라 130만원이상 지급가능)
 - 3)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월 100만원** ([표 1] 대학원생 평가 기준에 따라 100만원이상 지급가능)

제 6조 평가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단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차년도 제외)

[표 1] 대학원생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학부성적 (석사에 한함)	학부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전 학기 평량 평균을 및 백분율을 기준)		학부성적 전체성적	
영어시험성적	50점 만점(토익 990점 기준)		최근 2년	
대학원 직전학기	50점 만점		직전학기	
논문실적	1) SCI(E) 논문 (published만 인정)	한 편당 200점	최근 1년	
	2) 국내 논문 (published만 인정) & SCI(E) 이외의 논문	한 편당 50점	직전학기	
SCI(E) 논문 가산점 (최대100점)	JCR IF지수 기준 (연구재단 요청 기준에 따라 변경) 1) 전체 SCI(E)논문 중 상위 15%이내 2) 각 분야 SCI(E)논문 중 상위 15%이내 3) 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한 편당 50점 가산점(두 항목 중복 적용 불가)			
특허	국 외	출원	한 건당 100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300점	
	국 내	출원	한 건당 50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150점	
학술발표 (최대100점)	국 외	30점(Oral)		직전학기
		20점(Poster)		
국 내	15점(Oral)			
	10점(Poster)			
기업체인턴 (최대100점)	한 달당 50점		직전학기	
수상실적 (최대100점)	한 건당 50점(한 건당 점수 / 동일 수상자수)		직전학기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학생이 제 1저자인 경우		첫 번째 저자 100%, 두 번째 저자 70%,	
	학생이 제 1저자가 아닌 경우		첫 번째 학생 저자 80%, 두 번째 학생저자 50%,	
특허 반영비율	한 건당 점수*발명자 공헌도 동일공헌도일 경우 한 건당 점수 = 공헌자 비율 / 동일 공헌자수 (단, 교수님 및 외부인은 제외)		첫 번째 공헌자 100%, 두 번째 공헌자 70%, 세 번째 공헌자 30%, 네 번째 이하의 경우 10%	
BK21four 참여율 점수(최대100점)	1) 주당 추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첫 학기 및 직전 학기	
	2) 실험 참여 및 성실도에 따른 지도교수 평가 최대 100점 (매우 성실>70, 50<성실<60, 40<보통<50, 30<미흡<40, 매우 미흡<30)		직전학기	
	3) 대학원생 과대표 참여율에 따라 최대 100점			

다. 참여교수 선정·교체

제 1조 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 2조 평가대상 기간

1. 평가는 상기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BK21 four 사업 개시 첫해의 평가는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2차년도말의 평가는 최근 2년간, 제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 3조 평가

1. 논문은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F의 합으로 한다. 단, IF는 해당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주저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여도를 인정하고(단일 주저자 1, 2명의 주저자 0.7, 3명이상 주저자 0.5), 공저자는 1/N만 인정한다 (N은 해당 논문의 총저자 수를 말한다).
3. 사업단 내 공저자 논문은 주저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1. 사업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2. 사업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4.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참여교수의 교체기준

1.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four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성과급 지급 기준

1.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2.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 교수의 평가 시 사업 단장의 평가 점수 비율을 최소 30% 반영 하도록 한다.
4.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2>에 따른다.
5. 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비율	40%	35%	25%

[표2]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교수 실적 (30점)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30점) : SCI논문 수	최근 1년
참여대학원생 실적 (30점)	지도 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 수(30점)	최근 1년
산학 협력 실적 (80점)	특허 출원 실적(10점)	최근 1년
	기술 이전 실적(30점) - 상(30)/중(20)/하(10)	최근 1년
	사업화 실적(20점)	최근 1년
	창업 실적(20점)	최근 1년
기여도 평가 (60점)	사업단 기여도 - 사업단장 평가 총점 중 30% 반영	
총점	200점	

- 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은 실적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세분화된 항목을 통합
- 총점 = 배점*각 항목 실적 건수*0.1+연구비수주실적/기술이전 실적 배점+기여도평가 점수

마.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 four “초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질병 극복 융합 교육연구팀” 소속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채용 기준

1. 계약교수

- 1) **계약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채용 1개월 전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와 대학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3) T/O 발생 1개월 전에 계약교수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만약 지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T/O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충당한다.

2. 박사후연구원

- 1) 박사후연구원의 채용기준은 최근 3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5이상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T/O 발생 1개월 전에 박사후연구원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3.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최대 4년까지 가능)**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논문 실적(IF 5점 이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4. 본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대학원 강의 및 지도 대신에 BK21 four 사업 참여 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을 수행한다.

바.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four 사업단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원기준

1. 국제학회 지원

- 1) 국제협력경비 집행 인정기준
 - － 4개국 이상 참여
 -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간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2)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 3) 체재비는 2주 이내에 한해 지원 될 수 있다.
- 4) 지원금액은 **학회등록비를 포함한**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5)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별첨 1]
 - － 국외출장계획서 1부[별첨 2]
 - －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팸플릿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 항공권 INVOICE 1부
 - － 학회 Accept Letter 1부
 -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6)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별첨 3]
 - －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 －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7)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2.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 1) 사업단에서 규정하는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와 연수 활동을 말하며, 단기해외연수는 15일 이내의 연수 활동을 말한다.
- 2) 연수지원대상 중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은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표 1 참고])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 3) 해외연수 지원자는 사업단이 지정하는 서류(별첨 2, 4)를 소정 기일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해외연수 대상자는 3항의 서류와 연수대상기관, 연구 관심 분야,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고 참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5) 지원금액은 학회 등의 등록비를 포함한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6)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별첨 3, 5)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해외석학초청 지원

- 1) 해외석학초빙은 사업신청서 상의 해외학자 유치 활용계획에 포함된 해외 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외에 사업단 공동연구에 반드시 필요하여 그 활용효과가 인정될 경우 피초청교수가 추천을 얻은 석학에 한하여 초청할 수 있다.
- 2)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저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3)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4)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바.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1. 본 사업팀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3. 자체 운영 규정 내용은 BK21 four 사업 훈령,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4. 자체 운영 규정의 내용이 많은 경우 항목별로 나누어 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 가능하다.

사. 부 칙

제 1조 기타 규정

본 자체운영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칙들은 BK21 four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